

#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83
----------	------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일

발의자 : 방미숙 의원

## 1.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하남시 해병전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5.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20년 8월 6일 ~ 8월 26일
-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 6.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하남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해병전우회” (이하 “해병전우회” 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6. 그 밖에 하남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은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